

안세회계법인 · 829-7575 세계재경저널 *AnSwer*

eAnSe.com • • • 2022/2/21

전직원 회람 공지 MEMO+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:計·經營 戰略

증여인데도 증여세 안 내는 HI과세·공제금액·과세기준금액 등 10가지

| 개념, 구분 | 증여세 면세, 공제, 비과세·차감액 등 | 관련규정 |
|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배우자증여 | 10년 단위 증여합산, 6억원 공제 적용 | 상증법 제53조제1항제1호 |
| 자녀간 증여 | 직계존속, 직계비속간 증여 10년 단위 합산 5천만원(미성년자 2천만원) 공제 | 상증법 제53조제1항제2호 |
| 친인척 증여 | 6촌 이내 혈족, 4촌 이내 인척 증여 : 10년간 1천만원 공 제 | 상증법 제53조제1항제4호 |
| 경조사 증여 | 모든 관계 증여, 과세표준 50만원 미만은 증여세 없음 | 상증법 제55제제2항 |
| 저가양수 고가양도 | 특수관계자간 적용, 거래대가와 시가와 ① 시가×30% 또는 ② 3억원 중 적은 금액의 차액은 증여 아님(특수 관계 아니면 관계없음) | 상증법 제35조제1항 (시행령 제26조) |
| 부동산 무상사용 | 무상사용이익은 증여, 1억원까지는 증여 아님 | 상증법 제37조제1항 |
| 금전무상대출 | 타인의 금전 무상대출, 적정이율 4.6%, 1천만원 미만 제외 | 상증법 제41조의4 |
| 재산사용용역제공 | 낮은 대가는 증여(1천만원은 예외), 높은대가 · 무상 등(시가의 30%는 예외) | 상증법 제42조 |
| 재산취득자금 | 재산취득자금, 채무상환 등(20% 해당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은 제외) | 상증법 제45조 |
| 증여세 비과세 |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익, 피부양자 교육비, 학자금, 축 하금, 혼수용품 | 상증법 제46조 |